

조선시대 송관의 공문서와 송자의 역할*

김경숙**

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사송(詞訟)에서 송관의 공문서 전송 방식과 송자(訟者)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고을 간의 공문서 전송은 공적 영역 내에서 운영되었고 민간 영역과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송 과정에서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소송상대자 및 증인의 소환이나 진술 확보, 또는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서증(書證)을 검토하기 위한 송관의 공문서[移文]는 송자가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기 위한 이문은 1634~1635년 경상도 의령현 소송에서 거제도도 이사한 피고 임환을 소환하고, 1685년 경상도 예천군 소송에서 영천에 사는 피고 이만생(李萬生)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1701년(숙종 33)의 전라도 구례현 소송에서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윤성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구례 현감이 용인 현감에 보내는 이문을 소송당사자인 정수명(鄭水命)이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였다. 조선시대 소송은 소송상대자를 법정에서 소환하는 책임이 소송당사자에게 주어졌으며 송관은 소지에 데깁을 써 주는 외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송상대자가 타 고을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송관의 데깁만으로 소환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때는 고을 대 고을의 차원에서 업무 요청이 필요하였고, 송관이 해당 고을 수령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소송당사자가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서증을 검토하는 이문은 1685년 예천군의 노비 소송에서 안동부의 호적과 영천관의 노비 속안을 상고하고, 1583년 나주목 소송에서는 광주관에 소재한 군안(軍案)을 상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서 이문을 전달하는 모습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25).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확인된다. 소송에서 서증을 검토할 때 송관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행하도록 〈청송식〉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타 고을 관청의 서증을 검토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은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획득하는 과정은 소송당사자가 소지를 제출하여 성급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고을 내에서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고 서증을 상고하는 방식과 다름없이 고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소송상대자나 증인의 소환 및 서증의 검토는 소송당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철저히 당사자주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소송 운영 방식하에서 송자들이 타 고을까지 왕래해야 하는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적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사송(詞訟), 공문서, 이문(移文), 소환, 서증(書證), 당사자주의, 법적 행위성

1. 머리말

조선시대 재판에는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이 있다. 이중 사송의 ‘사’(詞)는 말(辭)과 통해서 쓰고 또 다툰다(訟)는 뜻으로, 말로 다투는 소송을 가리킨다.¹ 또한 문서로 고소하는 것을 ‘사’, 말로써 다투는 것을 ‘송’이라 하여 문서와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남김없이 펼치고 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사송은 오늘날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으로 이해되고 있다.²

사송의 청리(聽理)에는 관할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고을에 거주할 때에는 그 고을 지방관이 송관의 역할을 했지만, 원고

1 『경국대전주해』, 경국대전주해 후집, 이진 천관 총재, 육조조, 사송, “詞 通作辭 亦訟也.”

2 『선각첨록(先覺添錄)』, 사송간 제6, “文以告訴謂之詞 言以爭辨謂之訟 詞訟者 民之所以盡其情 而聽理于官者也”; 박병호(1974),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p. 251.

와 피고가 서로 다른 고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피고의 고을 수령에게 소송³을 제기해야 했다. 또한 소송은 한 고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처리되기도 하였지만, 고을의 범위를 벗어나 몇 고을 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송들도 드물지 않았다. 이렇게 고을 간에 걸쳐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영역의 문제가 작동하였고, 고을 간에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업무 협력이 요구되었다.⁴ 그 과정에서 고을과 고을 간에 공문서들이 생산되고 주고받았는데, 1635년 의령현 소송에서 의령 현감, 고성 현령, 진주 판관, 함안 군수, 거제 현감 및 관찰사 등 여러 고을들 사이에 주고받은 수십 건의 공문서들이 결송 입안 내에 중첩적으로 얹혀 있는 모습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고을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들의 관계를 문헌학적 측면에서 정리한 연구가 소송에서의 공문서에 주목한 선행 연구로는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⁵

본고에서는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전송(傳送)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송관이 소송과 관련하여 타 고을에 공문서를 보낼 때 관에서 역리를 통해 전송하는 공식적인 공문서 전송 방식을 취하지 않고, 송관이 소송자에게 이문을 성급(成給)하여 소송당사자가 해당 고을에 직접 전달(傳達)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러한 소송자의 이문 전송 사례는 시기적으로는 16~18세기까지 이어지고 지역적으로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모두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소송’ 용어는 조선시대 ‘사송(詞訟)’을 의미한다. ‘사송’은 현대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오늘날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송’으로 대체하였다.

4 지방민에 대한 관할은 형사사건의 범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다른 고을로 도망갔을 때, 지방관은 그 고을에 이문(移文)을 보내 범인을 붙잡아 보내주기를 청구하였다(김선경(1992), 「민장치부책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1, p. 134).

5 박성호(2008), 「1635년 의령현 결송입안의 문헌학적 고찰」, 『장서각』 19, pp. 160-163.

6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관으로 공문서를 보내는 방식을 ‘전송(傳送)’이라 지칭한다. 『대명률』에서는 ‘체송공문(遞送公文)’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여 ‘체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해에서 ‘체송’을 ‘전송’으로 풀이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전송은 관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이므로, 소송당사자가 공문서를 직접 지니고 가서 목적지에 전해 주는 행위는 ‘전달(傳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행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별하였다.

확인되고 있어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조선시대 사송에는 ‘당사자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소송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시송다짐[始訟俵音]이 있어야 하고, 소송 진행 중의 증거 수집과 제출도 소송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송관의 판결을 위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결송다짐[決訟俵音]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은 원고와 피고 즉 소송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다.⁷ 이러한 모습이 소송 과정에서 고을과 고을 사이에 공문서를 주고받는 이문(移文)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 소송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문성급(移文成給)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송관이 어떠한 사안으로 소송자에게 이문을 성급하였는지, 그리고 이문 성급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조선시대 소송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공문서 전송과 사송(詞訟)에서의 공문서

조선시대 공문서 행정 시스템은 『경국대전』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관청 간의 행이(行移) 문서는 관(關)과 첩정(牒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관청의 위계에 따라 동급 이하의 관청에 보내는 평달(平達) 및 하달(下達) 문서는 관을 사용하고, 상급 관청에 보내는 상달(上達) 문서는 첩정을 사용하였다.⁸ 지방 행정에서도 이는 그대로 적용되어 관찰사와 군현 고을, 또는 고을 간에 주고받는 공문서들은 주로 관과 첩정이 사용되었다. 19세기 초반 영광군의 문서 행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영광 군수는 전라도 관찰사에

7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pp. 53-54.

8 박준호(2006),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p. 119.

게 첩정을 올려 상달하고, 전라도 관찰사가 영광 군수에게 지시 명령할 때는 관을 보냈으며, 영광 군수가 무장 현감에게는 관을 보내고 무장 현감은 영광 군수에게 첩정을 보냈다.⁹ 조선후기까지 공문서 행이 시스템이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조선시대 고을 간의 공문서 전송은 우역(郵驛)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었다. 조선은 주요 도로에 30리마다 역을 설치하고 역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역도(驛道) 단위로 찰방을 배치하고, 사신의 영송(迎送), 관물의 수송 등과 함께 공문서의 전송을 담당하게 하였다.¹⁰ 특히 공문서의 전송은 지체 없는 신속성과 분실이나 훼손 없는 완전성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¹¹ 『대명률직해』의 ‘체송공문’(遞送公文) 조항에 따르면, 역리가 공문서를 전송할 때에는 하루 낮밤 동안 300리를 어김없이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각(刻)에 태 20을 가하고 지체한 시간에 따라 가중처벌하였다. 또한 공문서가 도착하면 문서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다음 문서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태 20을 가하였다.¹² 이는 공문서를 밤낮 가리지 않고, 한 곳에 지체됨이 없이 신속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또한 문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공문서 전송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역리가 문서를 전송할 때 걸봉만 훼손되었으면 태 20, 내부의 문서까지 훼손되었으면 태 40, 중간에 공문서를 은닉하거나 열었을 경우에는 장 60에 처하고, 훼손된 문서 수량에 따라 가중처벌

-
- 9 노인환(2020),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 『역사학연구』 77, pp. 163-169.
 10 양정현(2016), 「조선초기 驛道制의 정비 과정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74, p. 82; 양정현(2021), 「조선전기 驛道制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1 한상권 등 역(2018), 『대명률직해』 3, 261 공문을 체송함(遞送公文) 3조, p. 161.
 12 『대명률직해』 권17, 兵律, 郵驛, 遞送公文 1, “凡各道各驛吏亦 凡矣公貼乙 傳送爲乎第亦中 晝夜良中 須只三百里不違遞送爲乎矣 三刻乙遲留爲在乙良 笞二十遣 每三刻加一等 罪止笞五十齊 公貼亦 到付爲去等 夾角夾板多少無亦 隨後文字不待爲遣 卽時傳送爲乎矣 違者番長乙 笞二十.”(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이하 동일)

하였다.¹³

이들 『대명률직해』의 조항들은 『대명률』의 규정을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 번역하여 적용한 것으로 조선의 공문서 전송 시스템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공문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중간에 문서가 유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법제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말해 준다. 법 규정 외에도 조선 정부에서 공문서 전송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 1448년(세종 30)에 중국에서 성장한 부사직(副司直) 이상(李相)이 중국과 조선의 다른 제도를 비교하여 제도 개혁을 건의했는데, 그중 공문서 전송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은 북경에서 제로(諸路)에 이르기까지 10리마다 모두 급체포(急遞舖)를 두어 공문을 전송합니다. 청컨대 이 법에 의하여 각도의 요로에 10리마다 포(舖)를 하나씩 두고 인근에 사는 백성이 지키면서 공문을 전송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다른 잡역을 면제해 주면, 역마의 폐단도 겹해서 줄어들 것입니다.¹⁴

이는 공문서의 전송만을 전담하는 포(舖)를 10리마다 설치하여 백성 즉 민간인을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역의 업무들 중에서 공문서 전송을 독립시켜 민간인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서 역마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효율성의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3 『대명률직해』 권17, 兵律, 郵驛, 遞送公文 2, “凡各驛吏亦 貼文傳送爲乎矣 萬一磨裂破毀皮封亦 不動原封爲在乙良 一道是去等 笞二十 每三道加一等 罪止杖六十齊 又公貼乙 損壞爲在乙良 一道去等 笞四十 每二道加一等 罪止杖八十爲齊 凡公貼乙 中間隱匿爲旅 本封乙 開破爲在乙良 一道是去等 杖六十遣 每一道加一等 杖一百爲限.”

14 『세종실록』, 세종 30년 1월 18일 을사.

그의 제안은 끝내 실행되지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공문서의 전송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 공문서는 나라의 공적 영역 내에서 관리되었고 민간의 영역과는 구분되어 유지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소송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문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 조선시대 고을 수령의 업무 중에는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송관으로서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은 한 고을 내에서 진행되고 판결되기 마련이었지만, 한 고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급 기관이나 다른 고을과 연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 경우 송관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타 고을에 업무 요청을 하고, 관찰사와 같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기 위하여 관, 첩정 등의 공문서를 주고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송관이 타 고을 또는 상급 기관과 공문서를 주고받는 이문(移文)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안들이 확인된다.

- ① 소송상대자나 증인 등 소송과 관련된 인물을 소환하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문.
- ②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증(書證)으로서 타 고을 관청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나 장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문.
- ③ 이송(移訟)으로 소송문서를 구송관에서 신송관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이문.
- ④ 상급 관청인 관찰사에게 소송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이문.
- ⑤ 상언·격쟁과 같은 계하공사(啓下公事) 및 중앙 관청에서 하달된 소송의 심리를 관찰사에게서 지시받고 보고하는 이문.

이들 중에서 ①과 ②는 소송상대자, 증인 및 서증 등 소송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③, ④, ⑤는 소송당사자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지 않고 관청과 관청 사이에 보고 지시하는 사안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문서로서 조선 정부의 공문서 전송 시스템에 따라 관청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문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소송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①과 ②의 경우에는 관청 사이에 직접 전송하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이문을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전송을 민간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적인 영역 내에서 운영되었던 시스템에서 볼 때, 이해 관계가 민감하게 걸려 있는 소송 문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관청에서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가 민간인의 손에 의해 전달되는 모습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송관의 이문(移文)과 송자의 전달

3.1. 소송상대자 및 증인 소환을 위한 이문

소송의 개시와 변론 진행을 위해서는 양측 소송상대자가 함께 법정에서 출석하는 행위가 요구되었다. 소송자가 소송관에게 소지를 제출하면 소송관은 소송자에게 소송상대자를 데리고 올 것을 명하는 데깁을 내렸고, 소송자는 그 데깁을 소송상대자에게 전달하여 함께 법정에서 출석하였다.¹⁵ 만약 소송상대자가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송자는 소송관에게 다시 소지를 제출하여 소송상대자가 관령을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호소하

15 피고를 대동하여 출두하라는 제사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은 ‘당사자송달주의’(當事者送達主義), 피고를 원고가 술래(率來)하게 하고 관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추행주의’(當事者追行主意)의 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다[박병호(1974),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p. 272, pp. 273-274; 전경복(1998), 「소지류의 데깁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11, 한국고문서학회, p. 125].

며 착래할 것을 요구해야 했다. 소송상대자가 계속 버티면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송은 개시하지도 못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일정기간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패소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노비를 상송(相訟)할 경우, 원고나 피고가 수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피고의 노비를 가두고, 두 차례 가둔 후에도 30일이 차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취송자(就訟者)에게 결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소송이 개시된 후에는 50일 가운데 30일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패소시켰다.¹⁶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송이 지체 없이 개시되고 변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상대자를 직접 찾아가서 관령을 전달하고 함께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였다.

이 경우 소송상대자가 기송(起訟)된 고을에 거주하면 송관인 해당 고을 수령의 ‘데김’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661년(현종 2)에 유학 정대운(鄭大雲)이 한성부 수진방 간동계에 위치한 183칸 가대(家代)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대운은 한성부에 소지를 제출하였고, 한성부 당상관이 “그 터에 들어와 사는 각 사람들을 착래(捉來)하여 한곳에서 심문하라”는 데김을 처분하였다.¹⁷ 이 데김 내용을 거행할 당사자는 정대운 본인이었으므로 여기에서 ‘착래’(捉來)는 관에서 관차(官差)를 파견하여 잡아온다는 뜻이 아니다. 송자인 정대운 스스로가 집터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의미이며, 데리고 오라는 ‘솔래’(率來)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¹⁸ 관에서 관

16 『경국대전』 형전, 사천, “相訟奴婢 元告被論中 自知理屈 累月不現 再囚家僮後 滿三十日不現者 始訟後五十日內 無故不就訟 過三十日者 竝給就訟者.” 이에 대해서는 손경찬(2018),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법사학연구』 57 참조.

17 1661년 한성부 결급입안, 19-20행, “題音內 厥基入接各人等捉來 一處推闕 堂上署押踏印”(『조선시대 결급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605).

18 1730년 12월에 서울에 사는 김지정(金志貞)이 공인권 문제로 한성부에 소지를 올렸을 때 한성부에서 “모두 데리고 와서[率來] 추문할 것”이라는 데김을 처분하였다(1731년

차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기하거나 데감을 거행할 사람이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했다.

소송상대자가 ‘착래’ 또는 ‘솔래’의 관령을 거역할 경우에는 소송 결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17세기 초반 안동부에 거주한 김복렴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장일경 등이 전임관 재임시에 무고하는 소지를 올려 자신을 추착(推捉)했으나, 그때 마침 중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므로 취송(就訟)하지 못했음을 호소하였다.¹⁹ 당시에 김복렴이 취송하지 않자 안동관은 관령을 무단 거역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 노비를 체포해 가두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 장일경이 소지를 제출하여 데감을 받아 피고 김복렴을 착래하고자 하였으나, 김복렴이 소송장에 나가지 않은 결과 패소하고, 대신 수옥된 노비가 죽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송상대자가 송관 고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정대운이 간동계 집터에 사는 사람들을 착래하고, 장일경이 김복렴을 추착할 때처럼 송관의 데감을 가지고 직접 소송상대자에게 가서 송정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송상대자가 타 고을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송관에게서 받은 데감만으로는 소환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고을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방관이 관할하는 경계 내에 있는 주민을 타 고을 사람이 타 고을 수령의 데감을 가지고 임의로 데려올 수는 없었다. 관할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을 수령 대 고을 수령의 차원에서 업무 요청이 필요하였다. 즉, 송관이 해당 고을 수령에게 공문서를 보내 소송자 및 관련인을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 고을 수령이 공문서의 내용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성부 성급 입안, 14행, “題辭內 並率來推問”(『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1029).

19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27-31행, “府內居一京等亦 稱以己上 前等內時 誣呈所志 推捉矣 身是乎矣 矣亦 其時良中 適得重病 方在死生中是乎等以 未克就訟 則自官或疑其虛托病 故無端拒逆 被捕矣奴 卒至杖斃”(『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983).

1634~1635년에 걸쳐 경상도 의령현에서 진행된 공사천 분간 소송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원고는 함안에 거주하는 이중발 등이고 피고는 고성 등지에 거주하는 비 은월 가족이었는데, 원고 측에서는 은월 가족이 자신들의 사노비인데 반주(叛主)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이중발 등이 시노비(寺奴婢)인 자신들을 압공위천(壓公爲賤)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사건이었다. 소송의 쟁점은 은월 모친의 양친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그가 고성현의 시비였으면 그 자손들은 종모법에 따라 모두 고성현의 시노비가 되고, 그가 원고 측 노자의 양처(良妻)였으면 노양처종부법에 따라 그 소송들은 원고 측 소유 사노비가 되는 상황이었다. 소송은 처음에는 고성에서 진행되었는데, 은월 일족이 고성에서의 족적 기반 및 관속(官屬)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장예원에 진고(陳告)하고 국왕에게 상언을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였다. 결국 원고 측에서는 “대춘[은월의 딸]의 일족 시노들이 모두 아전, 관속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필시 오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하여 소송을 의령현으로 이송하였다.²⁰

의령현으로 소송이 이관된 후 은월과 은월의 장녀 대춘은 고성에서 의령현으로 옮겨져 수옥된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은월의 차녀 임환은 고성현에서 거제도로 이사를 가서 수개월 동안 소환에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았다. 의령현에서는 임환을 소환하기 위해 고성현에 수차례 공문서를 보내야 했는데, 다음과 같이 관찰사에게 보고한 첩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괴수인 비 임환을 엄히 심문하지 않을 수 없어 착송(捉送)할 것을 그가 사는 고성현에 이문했는데, 처음에는 병이 위중하여 착송하지 못한다고 하고, 재차 이문하자 거제로 이사를 가서 이문하여 착송하겠다고 회답한 후

20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는 김경숙(2019), 「17세기 소송 현장과 노비의 소송 전략」, 『한국사연구』 187, 참조.

로 끝내 착송하지 않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계하공사(啓下公事)를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극히 온당치 않으므로 우선 첩보합니다. 고성현의 담당 형리를 본 의령현에 옮겨 가두고 비 임환을 반드시 착송할 것을 겸임 거제 현령에게 처분해 주십시오.²¹

이 첩정 내용에 따르면, 의령현에서 임환을 소환하기 위하여 고성현에 공문서를 두 차례 보냈는데, 첫 번째 공문서에 대한 고성현의 회답은 병이 위중해서 착송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공문서에 대해서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현 거주지인 거제현으로 공문서를 보내 착송하겠다는 회답이었다. 그런데 그 후 고성현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으므로 의령현에서는 고성현의 담당 아전을 가두고, 거제현에 임환을 착송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담당 아전의 수옥은 승인하지 않고 거제현에 이문하여 잡아올 것을 승인하였다.²² 거제현에 있는 임환을 착송하기 위하여 의령현, 고성현, 거제현 등 3개 고을과 상급 관청인 관찰사까지 모두 4개 관사의 공문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3개 고을과 관찰사까지 공문서를 왕래한 끝에 결국 임환은 수개월 만에 의령현 송정에 등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심문 내용을 보면, 의령현과 거제현 사이의 공문서 전송과 소환 과정에서 원고 측의 직접적인 역할이 개입되었음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같은 날, 임환 재추문. 아뢰입니다. “너를 착송하는 일로 이문(移文)을 지니고, 이증발과 하자징 등이 거제로 가서 너를 붙잡아 고성현에 도착하니, 무리를 지어 이증발 등을 난타하고 이문을 모두 찢어 버렸다고 이증발 등이

21 1635년 의령현 결급 입안, 285-290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496, 520).

22 1635년 의령현 결급 입안, 297-299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497, 520).

발괄(白活)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난타했는지 숨김없이 사실대로 현고하라”고 추고하셨습니다.²³

이 심문 내용을 보면, 원고 이중발 등이 피고 임환을 착래하기 위해 ‘이문’을 지니고 거제도도 가서 임환을 착송하여 고성현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문은 송관인 의령 현감이 거제 현감에게 보내는 공문서로 파악된다. 의령 현감이 관찰사에게 첩정을 올려 거제 현에게 이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관찰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의령 현감은 이에 근거하여 거제 현감에게 임환의 착송을 요청하는 이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령 현에서 거제현으로 이 공문서를 보낼 때 공적인 공문서 전송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인 원고 이중발 등이 직접 지니고 거제현에 갔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모습이다.

이는 소송당사자가 타 고을에 있는 소송상대자를 착송하기 위해 송관의 공문서를 직접 들고 갔음을 의미한다. 만약 임환이 의령에 있었다면 이중발 등은 의령 현감의 데감을 받아 임환에게 전달하여 착송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고을 경내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데감을 지니고 가서 소송상대자를 착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환은 타 고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이중발 등이 직접 공문서를 들고 가서 착송하고 있다. 이는 소송 고을 경내뿐만 아니라 타 고을에 거주할 경우에도 소송당사자가 소송상대자를 직접 착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고을의 경계를 넘어 타 고을의 관할 구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으로 보내는 이문이 필요하였고, 그 이문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지니고 가서 해당 고을 수령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3 1635년 의령현 결급 입안, 310-317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498, pp. 520-521).

이러한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앞에서 의령 현감이 관찰사에게 첩정으로 보고하면서 임환을 착래하기 위해 고성현에 두 차례 공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였는데, 그때에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이증발 측에서 의령 현감에게 공문서를 받아 지니고 고성 현령에게 전달한 행위가 행간에 담겨 있을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소송상대자를 착송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은 의령현 소송에 한정되지 않는다. 1685년(숙종 11)에 안동에 사는 유학 유후안(柳後安)과 영천에 사는 사노 이만생(李萬生)이 예천군에서 전개한 노비 상송(相訟)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²⁴ 소송은 원고 유후안이 경상도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예천관이 송관으로 배정되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피고 만생이 예천군의 송정에 소환되어야 했는데, 당시 만생은 영천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때문에 송관인 예천군수가 영천군수에게 공문서를 보내 만생을 착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문서를 받은 예천군에서 영천군에 회답한 공문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① (영천군의 이문에), “… 비로소 그 어미를 가두고 만생이 스스로 나타나는 즉시 잡아 보낼 것인데, 이문(移文)을 가져온 자가 등대(登待)한다며 이문의 회송을 재촉하므로, 그[만생]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잡아 보낼 계획 이라고 우선 이문하니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이문의 회송이다.²⁵
(밑줄은 인용자)

② 뒤이어 도착한 영천군의 이문에, “송척(訟隻)인 노 만생을 잡아들이려

24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노 태선의 처 평개가 양인 여성인지 종친부 소속 노비인지가 쟁점이었다. 원고 유후안은 평개를 양인 여성으로 주장하며 노 양처(良妻)와 그 소생들을 종친부에 투탁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 만생은 증조모인 시비(侍婢) 오십덕의 딸 이분이 영천군 노비안에서 누락되었는데, 평개는 바로 이분의 딸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비 오십덕-이분-평개로 가계가 이어지는 공노비라는 입장이었다.

25 1685년 예천군 결급 입안, 1-4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683).

했더니, … 만생의 친척이라고 하는 노 가둔의 발괄(白活)에 ‘… 제가 예천에 가서 피고로 송정에 서겠습니다’라고 했고, 유가의 노 억남의 발괄에도 ‘… 가둔을 잡아 보내 같은 곳에서 대변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으므로, 가둔을 원고 억남에게 맡겨 잡아 보내니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이문이었다.²⁶ (밑줄은 인용자)

- ③ 원고 유후안의 재추문: “진고인 만생을 (영천관의) 이문을 받아 잡아들이는 데 가둔이 노비와 주인의 명분도 없이 스스로 나와서 상전가에 덤비니, 천하에 어찌 이렇게 분통하고 망극한 일이 있습니까?”²⁷ (밑줄은 인용자)

①과 ②는 영천군에서 예천군의 이문에 대한 회답 이문 즉 회이(回移)다. ①은 1차 회이로 만생을 착송해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즉 영천군에서 예천군의 이문을 받고 피고 만생을 착송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옥에 가두고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자 했다. 그런데 예천군의 ‘이문을 가져온 자’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답을 재촉하자 아직 만생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회이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영천군의 회이는 ‘이문을 가져온 자’가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②는 영천군의 2차 회이로 만생을 대신하여 노 가둔이 소송에 임하겠다고 자원하므로 착송해 보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가둔을 착송한 방식은 영천관에서 관속을 파견하여 예천관으로 직접 압송해 간 방식이 아니라 원고 측에 가둔을 인계하여 데리고 가게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①의 ‘이문을 가져온 자’다. 그는 고을 간의 공문서 전송을 위한 공적 시스템하에 있던 역리(驛吏)였을까? 그의 정체는

③ 원고 유후안의 진술 중에서 드러난다. 즉 만생을 영천관 이문을 받아 잡

26 1685년 예천군 결급 입안, 5-15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683).

27 1685년 예천군 결급 입안, 470-472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698).

아들이는데 노 가둔이 대신 나와서 상전가에 덤뻐했다는 것이다. 영천관의 이문을 받아서 예천군에 전달하여 피고 만생을 잡아들인 당사자가 원고 자신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①에서 ‘이문을 가져온 자’는 역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②에서 원고 측이 가둔을 착송해 갈 수 있었던 것도 예천군의 이문을 받아 와서 영천군에 요구한 결과로 파악된다. 원고 측이 영천군에 사는 피고 만생을 착래하기 위해 예천군의 이문을 가지고 영천군에 두 차례 왕래했음을 보여 준다.

이 사례에서도 의령형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당사자가 타 고을에 거주하는 피고를 착래하기 위하여 송관에게서 이문을 받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서 기록상으로는 예천관과 영천관의 이문 왕복 사실과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유후안의 진술 내용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행간에 원고의 이문 전달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소송의 개시와 진행을 위한 소송상대자의 소환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이문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소송상대자 뿐만 아니라 증인을 소환하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소송당사자가 직접 이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701년(숙종 33)에 구례 현감이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 생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용인 현감에 보내는 이문을 소송당사자인 정수명(鄭水命)이 전달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서증(書證) 상고를 위한 이문

앞 절에서 소송당사자가 타 고을에 있는 소송상대자를 착래하는 과정에서 송관의 이문을 전달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타 고을의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문서 즉 서증(書證)을 확보하는 과정을 검토해 본다.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문서를 처리하는 방식은 1585년에 간행된 『사송유취』(詞訟類聚)의 「청송식」(聽訟式)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문기를 제출하게 한다.
- 문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봉인한다. 원고와 피고가 여기에 서명을 하고, 다짐장을 받은 다음 본래 주인에게 문기를 돌려준다.
- 문기를 나중에 다시 제출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또 불러 문서가 이상 없다는 완고(完固) 다짐장을 받은 후에 개봉한다.²⁸

이를 보면, 서증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검토한 후에 봉인하고 원고와 피고가 봉인한 곳에 서명을 하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다짐장을 받은 다음에 문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처럼 증거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확인하고 다짐장을 제출하는 과정을 전준(傳准)이라고 하였다.²⁹ 후에 다시 그 문서를 검토해야 할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전의 봉인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 개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문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타 고을에 있는 증거문서는 어떻게 검토하였을까? 민간에 소재한 증거문서는 소송 고을이건 타 고을이건 관계없이 소송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송장에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증거문서는 소송자들이 임의로 가져와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관청 내의 문서나 장부를 함부로 관청 밖이나 타 고을로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관청에 소재

28 『사송유취』, 청송식(서울대규장각소장, 규474; <https://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29 김경숙(2019), 「제주민의 재산상속 소송과 서증: 1663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4, pp. 55-59 참조.

한 문서나 장부는 공문서로서 공신력과 증거력이 높았으며, 소송에서 증거 문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을까?

타 고을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및 장부들 중에서 서증으로 상고하는 대표적인 것이 ‘호적대장’이었다. 특히 노비 소송의 경우에는 쟁점이 된 노비의 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청의 호적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호적대장을 열람하는 원칙은 15세기 말에 간행된 『대전속록』³⁰과 18세기 영조대에 간행된 『속대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소송을 심리하는 각 관사에서 만약 장적을 상고할 일이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이문(移文)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질하여 보여 주고 회답한다. 호적은 보내지 않는다.³¹ (밑줄은 인용자)
- ② 경외의 송사를 심리하는 관원이 호적을 상고할 일이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한성부나 해당 고을에 이문(移文)한다. 한성부나 해당 고을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호적을 등서해 보여 주고 회답하며, 호적대장은 보내지 않는다.³² (밑줄은 인용자)

이에 의하면 호적대장의 열람은 송관이 해당 호적을 소장하고 있는 한성부나 해당 고을에 업무 요청을 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공문서를 받은 한성부나 해당 고을에서는 호적 자체를 보내지는 않고 호적의 내용을 등서하여 회답하였다. 그런데 ①에서는 호적을 등서할 때 ‘원고와 피고에게 질시(質示)’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는 더욱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30 『대전속록』은 『경국대전』 이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법령을 수록하여 1492년(성종 23)에 완성되었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31 『대전속록』, 호전, 집행.

32 『속대전』, 호전, 호적.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호적을 등서해 보여 주고 회답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질시’는 원고와 피고가 대질한 자리에서 호적을 등서해 보여 준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서증을 제출하면, <청송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검토하고 다짐장을 제출하는 전준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해야 하는 청송식의 서증 검토 방식이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호적을 확인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등서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 양측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음을 말해 준다. 때문에 고을에서 고을로 호적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서가 진송될 때에는 공문서만 도착해서는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해당 고을로 이동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했다. 이는 곧 호적 열람을 요청하는 송관의 이문을 소송당사자가 직접 전달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685년 예천군의 노비 소송은 소송 현장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소송에서 원고 유후안(柳後安)이 피고 만생을 착래하기 위하여 예천관의 이문을 영천관에 직접 전달했음은 앞 장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그런데 유후안의 진술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본 예천군에 접송(接訟)한 뒤 안동과 영천 양쪽 관의 호적과 속안(續案)을 상고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이문을 받아 나란히 나아가 상고했습니다. 반노 가둔 등의 양적(良籍)은 그들의 전후 주인이 수록된 페이지에 밝게 실려 있어 한 곳도 의심할 곳이 없었고, 만생이 말한 ‘이분이 오십덕의 딸이고 평개가 이분의 딸’이라는 것은 원래 근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양쪽 관에서 등서해 온 문서를 살펴보면 그 양적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³³ (밑줄은 인용자)

33 1685년 예천군 결급 입안, 1105-1110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p. 718-719).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원고 유후안의 소유노 태선의 처였던 평개가 양인 여성인가 시노비인가를 판별하는 문제였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평개 가족의 호적과 노비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평개 가족은 남편 태선과 함께 상전가인 유후안의 호적에 소유노비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유후안의 거주지인 안동부 호적을 상고해야 했다. 또한 평개 시노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천관의 노비 속안을 상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예천 군수는 호적이 있는 안동관과 노비 속안이 있는 영천관에 이문을 보냈다.

그런데 인용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송관의 이문을 받아 안동과 영천에 함께 가서 호적과 노비 속안을 상고하고 해당 부분을 등서해 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 결과는 호적에서는 평개의 아들 가둔이 주인가 호적에 실려 있음을 확인했는데, 노비 속안에서는 평개가 이분의 딸이고 오십덕의 손녀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결과와는 별개로 타 고을에 소재한 호적을 상고하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이문을 받아서 해당 고을로 가서 함께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은 법전의 규정이 그대로 준수되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천군 소송에서는 호적 열람뿐만 아니라 노비 속안을 열람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갔는데, 법으로 규정된 호적 외에 관청의 장부를 열람할 때에도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1583년 나주목 소송은 호적이 아닌 타 고을 관청 소재의 서증 열람 방식을 보여 준다.

이 소송은 원고 문윤원(文允元)과 피고 임경수(林慶秀)가 양처병산소생 노비를 둘러싸고 대립한 분쟁으로 송관은 나주 목사 김성일이었다. 원고 문윤원은 자신의 양처 양금(良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윤손(尹孫)과 손자를 피고 임경수가 자기 노비인 것처럼 호적대장에 암록(暗錄)하여 압량위천(壓良爲賤)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임경수는 양금은 양처 소생비로 양녀가 아님을 주장하며 맞섰다.³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문윤원은 윤손이 양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촌인 김언수 등도 광주에 살면서 양역을 담당하여 내금위 정병으로 입번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³⁵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주 목사는 군안(軍案)이 소재한 광주관에 다음과 같이 이문하였다.

- ① “계미년(1583, 선조16) 9월 22일, 상고에 관한 일. 때에 맞추어 추열해 판결 바이므로 (광)주에 거주하는 김언수, 김언희 등이 모처 모호에서 충청했고 모처에서 입방했는지 … 군안을 상고하여 급히 이문할 것. 광주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윤원이 가져갔다.³⁶ (밑줄은 인용자)
- ② 10월 초6일에 도착한 광주관의 회답(回答) 관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에 관한 일. 이번에 도착한 관문에 ‘… 이문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불러들이니 원고 임경수는 (관정에) 나왔고 피고 윤원은 공문(公文)을 지니고 나왔다가 스스로 이치가 바르지 못함을 알고 도주했습니다. … 상송하는 일에 원고만으로 상고하지 못하니 서로 …입니다.”라고 광주관에서 회답했다.³⁷ (밑줄은 인용자)

①은 나주 목사가 광주관에 이문한 내용으로 김언수 등의 군안 내용을 상고하여 이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는 이문 내용을 등서한 후에 그 이문을 ‘윤원이 가져갔다’고 기록하였다. ②는 광주관에서 군안을 상고한 결과를 회이한 문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광주관에서 군안을 검토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이들이 관정에 나왔고, 이들 중 윤원이 나주 목사의 공문을 지니고 나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검

34 본 소송의 전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임상혁(2002),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 『고문서연구』 21 참조.

35 1583년 나주목 결급 입안, 131-133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239).

36 1583년 나주목 결급 입안, 175-178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232).

37 1583년 나주목 결급 입안, 191-198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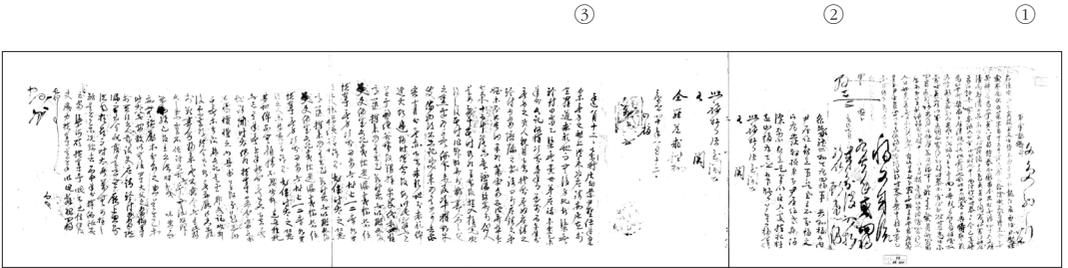
토를 완결하기 전에 윤원이 도주하여 한쪽만으로는 군안을 상고할 수 없다는 사정을 광주관에 회이하였다. 이를 보면, 군안을 상고하기 위해서도 소송당사자가 이문을 가지고 갔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쪽만으로는 진행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호적뿐만 아니라 군안과 같은 다른 서증들에 대해서도 호적에 준해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상고하는 원칙이 지켜졌음을 말해 준다.

이는 송관이 증거문서를 검토할 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행하도록 한 <청송식>의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소송 고을 내에서 증거문서를 검토할 때뿐만 아니라 타 고을 관청에서 서증을 검토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때문에 송관의 이문을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은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서증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서 상고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4. 송자의 이문성급(移文成給) 청원과 행위성

앞 장에서 소송 과정 중 타 고을에 있는 소송상대자의 소환 및 서증 확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송당사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문을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소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1583년 나주목 소송에서 원고 윤문원은 나주 목사에게 소지를 제출하여 양역에 종사하고 있는 처족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관아에 이문하여 상세히 분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⁸ 나주

38 1583년 나주목 결급 입안, 164-175행(『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p. 231-232).



[그림 1] 1701년 구례현의 이문성급(移文成給)과 용인현의 회이(回移)³⁹

목사가 광주관 등에 보내는 이문을 성급한 것은 결국 원고의 이문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음을 말해 준다.

1707년(숙종 33)에 전라도 구례현의 기상(記上) 전답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도 송자가 이문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구례현 소송은 자식 없이 사망한 노비의 전답을 계쟁물로 순천에 사는 강인신(姜仁信)과 구례에 사는 정수영(鄭水永)이 소유권을 다툰 사건이다. 원고는 장인이 생전에 매득한 전답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상전 윤 생원이 기상 받은 전답을 부친이 매득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다.⁴⁰ 변론 과정에서 피고 측은 기상 전답을 매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인 윤 생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 진술서는 이전 1701년에 정시태(鄭時泰)와의 소송에서 정수영의 형 정수명이 확보한 진술서였다. 이는 1707년 구례현 결급 입안에 등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문서 원본이 전하고 있어,⁴¹ 정수영 측에서 진술서를 확보하는 과정과 함께 이문의 전송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3건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는 형태다. ①은 정수명이 구례현에 제출한 소지이고, ②는 용인 현령이 구례 현감에게 회이(回移)한 관문(關文)이

39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37, pp. 76-78(<https://archive.aks.ac.kr>).

40 본 소송의 전말에 대해서는 김경숙(2018), 「결송입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한국문화』 83 참조.

41 『고문서집성』 37-구례 운조루편(1), 첩관통보류, 첩정, 1701년 정수명 소지.

다. ③은 용인관에서 유학 윤성임에게 받은 진술서인 초사(招辭)다.

① 1701년 정수명의 소지와 구례현 데깁

군관 정수명. 이 삼가 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비를 분간하여 밝힐 길이 없으니 논을 방패한 윤 생원에게 그 진위를 이문(移文)하여 탐문한 후에 정시대 입안 중에서 교거(校去)할 것을 각별히 처분해 주십시오. 【題音】 이문을 성급하니 회이가 도착한 후에 판결하기 위해 속히 이문을 받을 것. 25일.⁴²

이 문서는 정수명이 생원 윤성임(尹聖任)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례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다. 내용은 이문으로 윤생원에게 진위를 탐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례 현감은 이문을 성급하고 회이가 도착한 후에 판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⁴³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윤생원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구례현으로 소환하거나 진술서를 받아야 했는데, 두 경우 모두 용인관에 업무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수명은 구례 현감에게 이문을 요청하였고, 구례 현감도 정수명의 요청을 수락하여 용인 현령에게 보내는 이문을 성급해 주면서 용인 현령의 회이가 온 후에 판결하겠다고 처분한 것이었다. 원문서의 데깁에서 ‘속히 이문을 받을 것’이라고 한 구절은 이후 결급 입안에 등서될 때는 ‘속히 패(牌)를 받을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같은 맥락의 의미로 파악되는데, 공문을 전송하는 증표로서 패를 발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42 1701년 정수명 소지(『고문서집성』 37, p. 76); 1707년 구례현 결급 입안, 288-313행(『조선시대 결승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 859). 원본 문서와 결급 입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校去가 拔去로 바뀌고 移文受納이 受牌로 바뀌어 두 군데에서 문자상의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43 ②용인 현령의 회이 관문에 따르면, 구례현의 이문은 ‘윤성임을 기송(起送)하라’는 내용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타 고을에 있는 소송상대자뿐만 아니라 증인을 소환할 때에도 고을 간의 이문이 필요했음을 보여 준다.

이 사례는 송자가 송관의 이문을 획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당사자 본인이 먼저 송관에게 소지를 제출하여 이문의 필요성을 설득시켜 요청하고, 그에 대해 송관이 이문을 성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송관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결정이 아니라 송자의 요청에 의해 송관이 이문을 성급하는 방식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때 성급된 이문은 정수명이 용인 현령에게 전달하여 용인관에 보관되었을 것이므로, 본 점련 문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② 용인 현령의 회이 관문

경기 용인 현령이 회이하는 일. 귀 현의 이문 내용에, “윤성임(尹聖任)을 기송(起送)하라”하였습니다. 이문이 도착한 즉시 패(牌)를 내어 착래하니 윤성임이 노쇠하고 병든 것이 심하여 기송할 형편이 아니므로 그에게 초사(招辭)를 받아 점련하여 회이합니다.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관문을 보내니 청컨대 잘 살펴 시행하십시오.

우 관

전라도 구례현

강희 40년(1701, 숙종 27) 8월 12일

행 현령 <착서>

<관자 답인(關字踏印)>

③ 윤성임의 초사

신사년(1701, 숙종 27) 8월 12일 하동촌(下東村)에 사는 유학 윤성임, 나이 65.

아뢰니다. ... 설사 응청의 몫으로 기록된 전답이 은루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드러났더라도 그 상전이 법대로 추심하는 것이 마땅하니 정시태가 가져갈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물며 지난 병오년(1666, 현종 7)에 값을 받고 매도한 논을 그가 어찌 함부로 빼앗겠습니까? 이는 불과 신임 관리의 위력으

로 함부로 빼앗는 것이니 이 같은 사연으로 회이(回移)해 주십시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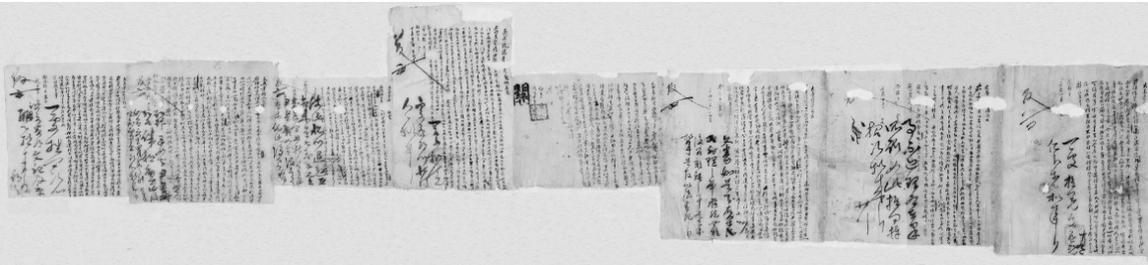
관 <착서> 백 <착서>

용인 현령이 구례 현감에게 보낸 관문 ②는 『경국대전』 문자식에 수록된 공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마지막 부분에 관자인(關字印)이 찍혀 있는 원본 문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용인 현령은 윤성임을 소환하여 구례로 보내는 대신에 그에게서 진술을 받아 회답하는 관문에 첨부하여 보내고 있다. 첨부된 진술서 ③은 ②번 문서에 점련된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윤성임이 분쟁지 논을 정수명 집안에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내용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진술인의 서명과 용인관의 착관, 서명, 및 관인이 담인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정수명은 구례 현감의 이문을 가지고 전라도 구례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직접 이동하여 이문을 전달하였고, 용인 현령은 윤성임을 소환해 보내는 대신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구례 현감에게 회답 이문을 보냈다. 이 회답 이문을 정수명이 받아서 구례 현감에게 전달했음은 소지와 함께 점련되어 있는 회이 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소송당사자가 송판에게 소지를 제출하여 이문을 요청해 성급 받고 이를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그 회답 공문 또한 당사자가 직접 받아서 송판에게 전달하였음을 말해 준다.

1647년 11월 21일에 남평 현감이 해남 현감에게 보낸 관문도 송자의 이문 성급 요청에 의해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소송은 해남현에 거주하는 윤경담(尹景談)과 남평현에 거주하는 이소(李韶)의 전답 분쟁이었다. 윤경담은 계쟁지인 해남현 녹산면에 소재한 논 9마지기를 이소의 문중 사람에게 매득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소는 외가에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관

44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37, pp. 76-78; 1707년 구례현 결급 입안, 288-313행 (『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pp. 859-861).



[그림 2] 1647년 남평 현감의 관(關) 및 점련문서

문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 문기를 상고하는 이문으로 다음과 같다.

남평 현감이 상고(相考)에 대한 일입니다. 남평현에 거주하는 유학 이소(李韶)의 노 석경(石京)의 명의로 올린 소지에 “해남 녹산(泉山) 구성방축(舊城防築) 내 논 9두락지는 제 상전이 외가에서 상속받은 논입니다. … 이 문기를 내려 보내 관정에 나아가 변별할 일이지만 적잖은 문기를 먼 곳으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오니 이 문기를 상고하시고 옮겨 적은 후 관인을 찍어 이문을 성급해 주시도록 소지를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고해 보니, 승정 8년(1635) 3월 21일자 이소의 화회문기 중 ‘녹산면(泉山面) 구성방축(舊城防築) 내 2작 논 9마지기를 상속받은 것이 확실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입니다.’⁴⁵(밑줄은 인용자)

이 관문의 내용을 보면, 남평 현감이 해남 현감에게 관문을 보내게 된 것은 이소 측에서 소지를 제출하여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소측은 분쟁지가 외가에서 상속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해남 소송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기가 많아서 먼 길을 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을 수령에게 제출하고 관에서 그

45 1647년 남평 현감(南平縣監) 관(關), 『고문서집성』 3 해남윤씨편, 소지류, 소지(입지) 14, p. 85.

내용을 옮겨 적고 관인을 찍어서 해남현에 이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남평 현감은 이소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해남 현감에게 관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관청에 소재한 서증은 아니지만 민간 소재의 서증을 관에서 상고하여 그 결과를 고을 범위를 벗어나 보낼 때에도 이문성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인 이소 측의 요청으로 이문성급이 이루어졌고, 그 이문은 당사자가 직접 지니고 가서 해남 현감에게 제출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 이문성급은 소송 과정에서 타 고을에 소재한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고 증인을 소환하거나 진술을 받아 오고 서증을 상고하는 모든 과정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소송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되었음을 보여 준다. 같은 고을 내에 소재한 소송상대자를 착래하고 서증을 상고하는 방식과 다름없이 소송당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송자의 적극적인 행위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송관이 타 고을에 보내는 공문서의 전송 방식과 송자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고을 간의 공문서 전송 시스템은 우역(郵驛) 제도에 기반하여 공적 영역 내에서 운영되었고 민간 영역과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송관이 타 고을에 보내는 공문서 중 ① 소송상대자 및 증인의 소환이나 진술의 확보, ② 타 고을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서증 검토 등의 경우에는 송자가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기 위한 이문은 1634~1635년에 걸쳐 의령현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 이중발 등이 거제도도 이사한 피고 임환을 착래하기

위해 의령 현감의 이문을 지니고 거제도도 갔다. 1685년의 예천군 소송에서는 원고 유후안이 영천에 사는 피고 이만생을 소환하기 위해 예천 군수의 공문서를 지니고 영천 군수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1701년(숙종 33) 구례현의 정수명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구례 현감이 용인 현감에 보내는 이문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소송 운영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파악된다.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시대 소송에서 소송상대자를 법정에서 소환하는 책임은 소송당사자에게 주어졌으며, 송자는 송관에게 '데김' 형태의 처분을 받아 소송상대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송자의 이문 전달은 이러한 원칙이 타 고을에 거주하는 소송상대자를 소환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소송상대자가 타 고을에 거주하는 경우 송관의 데김만으로는 소환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고을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방관이 관할하는 경계 내에 있는 주민을 타 고을 사람이 타 고을 수령의 데김을 가지고 임의로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고을 대 고을의 차원에서 송관이 해당 고을 수령에게 공문서를 보내 소송상대자나 증인을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공문서를 소송당사자가 지니고 가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타 고을 관청의 서증(書證)을 상고하기 위한 이문은, 1685년 예천군의 노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송관의 이문을 받아 안동과 영천에 함께 가서 호적과 노비 속안을 상고하고 해당 부분을 전서(傳書)해 왔다. 1583년 나주목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광주관의 군안을 상고하기 위해 나주목사의 이문을 받아서 광주관에 전달하였다. 이는 소송관이 증거문서를 검토할 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행하도록 한 <청송식>의 규정이 타 고을 관청의 서증을 검토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서증을 상고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전달하는 방식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증을 상고하는 규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시기적으로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16~18세기 사이의 결송입안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 시기 결송입안과 같은 소송 문서에서 ‘이문’이나 ‘행이’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행간에는 소송당사자의 공문서 전달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송자의 공문서 전달 방식은 이후 시기에도 당사자 중심의 소송 운영 원칙이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19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전 시기인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조선 전체에 걸쳐 일관된 소송 운영 방식이었는지 16세기 이후에 변화된 방식이었는지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전송 시스템이 공적인 영역 내에서 운영되었음을 고려할 때, 소송 과정에서 공문서가 공적 영역을 벗어나 민간인의 손에 의해 전달되는 모습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소송당사자의 공문서 전달 역할은 조선시대 소송 운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소송당사자가 소송관의 이문을 획득하는 과정은 이를 해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1583년 나주목 소송에서 송관이 광주관 등에 이문을 보낸 것은 원고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1701년 구례현의 소송에서는 정수명이 구례 현감에게 소지를 제출하여 용인에 거주하는 윤성임의 증언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이문의 성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구례 현감은 이문을 성급하고 공문서 전송자의 증표로서 패(牌)를 발급하였다. 송관이 공문서를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소지를 제출하여 요청할 경우에 소송관이 이문을 성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고을 내뿐만 아니라 타 고을에 소재한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고 증인을 소환하거나 진술을 받아오고 서증을 상고하는 모든 과정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철저하게 당사자주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조선시대의 소송 운영 체제에서 송자들은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현실적 장애들 즉 고을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경제적·심리적 부담들을 감당해야 했다. 그

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무릅쓰고 심지어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장거리 여행도 나설 정도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역동적인 법적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 『세종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
- 『경국대전』, 『대전속록』, 『속대전』(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law/>).
- 『사송유취』, 서울대규장각소장, 규474.
- 한상권 등 역(2018), 『대명률직해』, 한국고전번역원.
- 심희기 등(2022), 『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역주·탈초본』, 민속원.
- 한국학중앙연구원(1998), 『고문서집성』 37-구례 윤조루편(Ⅰ).

논저

- 김경숙(2019), 「17세기 소송 현장과 노비의 소송 전략」, 『한국사연구』 187, 한국사연구회.
- 김경숙(2019), 「제주민의 재산상속 소송과 서증: 1663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4, 한국고문서학회.
- 김경숙(2018), 「결송입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한국문화』 83,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김선경(1992), 「민장치부책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1, 역사학연구소.
- 노인환(2020),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 박병호(1974),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 박성호(2008), 「1635년 의령현 결송입안의 문헌학적 고찰」,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준호(2006),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 손경찬(2018),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법사학연구』 57, 연세대 법학연구원.
- 양정현(2021), 「조선전기 驛道制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양정현(2016), 「조선초기 驛道制의 정비 과정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74, 한국사학회.

- 임상혁(2002),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임상혁(2000),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전경목(1998), 「소지류의 데깅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11, 한국고문서학회.

원고 접수일: 2022년 7월 15일, 심사 완료일: 2022년 8월 1일,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9일

ABSTRACT

Litigator's Personal Delivery of the Official Documents Concerned with Lawsuit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yeongsook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litigator in the lawsui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focus on the way that official litigation documents necessary for the progression of the lawsuit were deliver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delivery of official documents between counties involved the official network, and was not entrusted to civilians.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litigation progression, the litigator personally delivered the official documents concerned with his/her litigation progression in the cases of summoning or securing a statement of the litigation opponent and witnesses living in another county, and reviewing the documentary evidence kept at the office of another county.

These cas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arteienprinzip* in the litigation progression in the Joseon dynasty. Firstly, the responsibility for subpoenaing the other party in the lawsuit was on the party to the lawsuit, and the judge provided the rationales for the subpoena by writing on the litigator's petition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litigation progression.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if the other party to the litigation had resided in another county, they could not have been summoned by the judge's measures alone because the other party's residence was outside the judge's jurisdiction. The judge sent an official document to the head of the county where the other party to the litigation lived, asking the head's cooperation. At that time, the party to the litigation carried with himself/herself the official document to the head.

In addition, when the litigator examined the documentary evidence, the principle was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ould do it together. This was applied when examining the documentary evidence kept at the office of another county. To this end,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carried with themselves the official document of requesting the co-operations by the heads of the other counties which kept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litigation progression.

The procedure in which the litigation party obtained the official documents necessary for litigation progression began with the request made by the litigation party's filing a petition to the judge. The summons of opponents and witnesses in the litigation, and the review of evidential documents were conducted not only within the county where the litigation is taking place, but also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y where the litigation was conducted. Also in the latter progression, the litigation procedures were centered on the parties to the lawsuit. This meant that the litigation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litigators' active and subjective agency.

Keywords Lawsuit, Official Document, Delivery of Official Documents, Summon, Evidential Documentation, Parteienprinzip, Litigators' Subjective Agency